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336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337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338호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 정선군조례 제233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21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3-265호 신조공인 공고 67
- 정선군공고 제2013-26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 공시송달
공고 70
- 정선군공고 제2013-272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71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4. 17.

정선군 조례 제2336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제12조의3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탁관리) ① (생 략) 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2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p> <p>② ~ ④ (생 략)</p>	<p>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 . <u>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p>	<p>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u>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① ~ ③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군립공원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 자연공원법 제37조제3항의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1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4. 17.

정선군 조례 제2337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8.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정선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군민이나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4조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제외) ①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사람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피해발생 사실을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피해지원)”을“(농작물 등 피해보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6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 연료비 및 식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3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피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u></p> <p><u>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u></p> <p><u>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u></p>	<p><u>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u></p> <p><u>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u></p> <p><u>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u>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에서 재배된 농작물 2. 정선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8.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p>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정선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군민이나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p>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제외)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지원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5조(피해보상 제외) ① 피해 농업인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지원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p>② 사람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피해농가 입회하에 읍면장이 정밀 조사한다.</u></p>	<p><u>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피해발생 사실을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u></p>
<p><u>제9조(피해지원) ① 피해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생 략)</u></p>	<p><u>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기준) ① --- -----500만원----- -----.</u></p> <p><u>② (현행과 같음)</u></p>
<p><u><신 설></u></p>	<p><u>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u> <u>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u> <u>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1조(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p> <p>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12조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 연료비 및 식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p><신 설></p>	<p>제13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u>(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4조</u>(시행규칙) ----- -----.</p>

개 정 이 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은 물론 임산물·수산물 등에도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농·어업 및 임업, 인명피해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제3조)
 - 현 행 : 농업인, 농작물
 - 확 대 : 농업·임업·어업인,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 피해보상 제외 항목 추가(제5조)
 -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인명피해의 경우 자기과실 등 피해보상 제외기준 신설
- 농작물 등 피해보상 기준 조정(제9조)
 - 농작물 등 피해보상 금액을 환경부 고시(2011-41)와 동일하게 조정
(현행 최대 600만원 ⇒ 최대 500만원)
- 인명피해 보상기준 신설(제11조)
 - 상해시 최고 500만원, 사망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
-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12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및 피해방지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4. 17.

정선군 조례 제2338호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정선군이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정선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은 정선군 사복읍에 둔다.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4.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명,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선군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며, 정선군 감사범무담당직이 겸임할 수 있다.

1.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2. 정선군 보건소장
3.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2명
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2명. 단, 소비자 관련단체가 없을 경우 정선군 번영회에서 추천
5.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2명
- ③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와 감사는 위 임기의 범위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조(이사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③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법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원장)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임용 후보자 중에서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 ② 원장에 대한 해임 등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 제한) 의료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원의 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의료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의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 복무규정 및 퇴직금규정
3. 의료원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를 따라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과태료) ① 군수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개시)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의료원 설립이 완료된 날부터 개시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p>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p> <p>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때</p>	<p>법 제29조제1항 제1호</p>	<p>300만원</p> <p>150만원</p>
<p>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p> <p>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p> <p>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p> <p>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때</p> <p>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 한 때</p>	<p>법 제29조제1항 제2호</p>	<p>300만원</p> <p>150만원</p> <p>100만원</p> <p>50만원</p> <p>50만원</p>

제 정 이 유

-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13년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정선군의료원 신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선군의료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의료원에서 행하는 사업을 정함(제3조)
- 정선군의료원 임원구성, 이사회구성, 원장 임용방법 등을 규정함(제4조~제6조)
-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및 기부금을 통한 손익금의 확보·처리 등 재원을 명시함(제10조~제12조)
- 의료원의 투명 경영을 위하여 지도·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함(제14조~제15조)
- 정선군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사용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함(제17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4. 17.

정선군 조례 제233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분뇨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 수 료	
	수 집 · 운 반 · 처 리	계
1리터	18원	18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p> <p>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u>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③ <u>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u></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개 정 이 유

-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설치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관련업체 처리량 급감 및 채산성이 악화되어 분뇨수집 및 처리 합리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삭제(제24조제1항제3호)
-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제24조제3항)
- 수거식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되어 있던 처리수수료를 분뇨 및 정화조로 통일(별표 6)
 - 수집 처리 수수료를 1L에 14원(분뇨), 15원(정화조)에서 18원으로 적용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4. 17.

정선군 규칙 제121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 기관 소속 또는 민간인으로”를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별표4·별표5·별표5의2·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2조(시험위원) ① (생 략)</p> <p>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u>3명</u>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u>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또는 민간인으로</u> 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5명</u> -----.</p> <p>③ ----- ----- ----- <u>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u> -----.</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p> <p>① (생 략)</p> <p>1. <u>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 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u></p> <p>2.~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p> <p>① (현행과 같음)</p> <p>1. <u>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 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u></p> <p>2.~ 3.(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직렬 \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사(2년), 산업기 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전국기능 대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능 대회 입상자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산업안전, 교통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 : 섬유 ,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 반 화 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농 업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일 반 농 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방송통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직렬	직류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선박항해	선박항해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 비 고 :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계급	직류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u>산업기계설비</u>)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u>자동차정비</u>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u>기계설계</u> ,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u>에너지관리</u> , 승강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u>컴퓨터시스템응용</u>)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작용용)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u>금속제련</u> ,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기술사(<u>섬유</u> , 의류)	기사(<u>섬유</u> , 의류)		
		기술사(<u>화학</u> ,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학, 식품)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u>품질경영</u> , 포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u>에너지관리</u> ,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토양환경</u> ,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토양환경</u> , 조정,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기술사(<u>섬유</u> ,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u>섬유</u> ,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시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u>토양환경</u> ,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u>토양환경</u> ,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u>기계</u> ,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u>산업기계설비</u>)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u>섬유</u>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u>섬유</u>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u>어업생산관리</u> ,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u>자동차정비</u>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u>철도차량</u> , <u>철도운송</u> , <u>자동차정비</u>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u>배관</u> ,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u>전기</u> ,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u>품질경영</u> , 승강기)
	전자	기술사(<u>산업계측제어</u> , 전자응용, <u>컴퓨터시스템응용</u> ,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u>생산자동화</u> , <u>전자</u> , <u>전자계산기제어</u> ,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u>에너지관리</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u>금속제련</u>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u>섬유</u> , 의류, 품질관리)	기사(<u>섬유</u> ,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u>섬유</u> ,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학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 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렬	직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보선,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전산응용건축제도 ,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 상담	전화 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 승강기)	기능사(전기 , 전기철도신호)
기계	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 농업기계, 배관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품질경영 ,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용접 ,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 인쇄 , 전자출판 ,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사진제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 ,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위험물)

계급 직렬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동력기계정비 ,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전 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동력기계정비 ,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조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원예 , 버섯종균, 화훼장식 , 산림, 임 업종묘, 식물보호)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기능사(축산, 식품가공 ,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 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역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 사 1급	
조리	조리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한글타자 1 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한글타자 2급, 한 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 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 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
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공 업</p>	<p>기계운전</p>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p>

공 업	조 선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공 업	일반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u>화학분석</u>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u>굴착</u>,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u>환경</u></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토양환경</u>,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p>
	잠업	<p>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 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농화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u>산업위생관 리</u>,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 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축산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 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u>임산가공</u></p>	
	산림보호	<p>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u>토양환경</u>,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p>	
	산림이용	<p>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u>임산가공</u>,</p>	
	조 경	<p>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u>시설원예</u>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u>시설원예</u>, <u>식물보호</u>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u>식물보호</u></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u>어업생산관</u> <u>리</u>,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p>	
	수산제조	<p>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u>수산양식</u></p>	
	수 산 물 검 사	<p>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p>	
	수산증식	<p>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p>	
	어 로	<p>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 경, <u>수산양식</u>, <u>어업생산관리</u>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해양교통 시 설	<p>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p>보 건</p>	<p>보 건</p>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p>식품위생</p>	<p>식품위생</p>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p>
<p>의료기술</p>	<p>의료기술</p>	<p>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p>환 경</p>	<p>일반환경</p>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건축사</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설 계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정,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정,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u>전파전자통신</u>,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u>전파전자통신</u>,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u>전파전자통신</u>,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섬유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화학	화학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산업경영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물리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p>
농업연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p>
농촌지도	농업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촌지도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녹지연구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p> <p>기 을 장 : 산림</p>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p>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p>	
수의연구	수 의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산업기사 : 축산</p> <p>기 능 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p>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p>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p>	
	수산공학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p>	
	수산가공	<p>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p>	
보건연구	의학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p>
	약학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p>
	공중보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경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개 정 이 유

-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개선 및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폐지·통합·신설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면접위원 수 및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제12조)
 - 현행: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3명이상, 시험위원의 1/2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 개정: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5명이상, 시험위원의 2/3이상 민간전문가로 구성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직렬의 대상 축소(제15조의2)
 - 현재 면제대상인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의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개정
-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증 등 정비(별표4·별표5·별표5의2·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4)
 -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른 명칭 변경

공 고

정선군공고 제 2013 - 265호

신조공인 공고

정선군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정 선 군 수

1. 사 용 일

- 가.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전용 1번) : 2013.4.12.
- 나.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전용 1번) : 2013.4.12.
- 다.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전용 4번) : 2013.4.12.
- 라.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전용 4번) : 2013.4.12.
- 마. 정선군수인 신동읍장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바. 정선군수인 신동읍장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사. 정선군수인 남면장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아. 정선군수인 남면장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자. 정선군수인 임계면장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차. 정선군수인 임계면장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카. 신동읍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타. 신동읍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전용) : 2013.4.12.
- 파. 남면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 2013.4.12.
- 하. 남면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 2013.4.12.
- 가. 임계면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 2013.4.12.
- 냐. 임계면장인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 2013.4.12.

2. 신조 이유 :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증명발급에 필요한 민원실전용(통합발급기용) 직인을 등록하고자 함

3. 신조공인 인영

신조공인 인영

신조공인명	인 영	신조공인명	인 영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 1)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 1)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 4)		정선군수인 (민원실전용 4)	
통합발급기전용 정선군수인 (신동읍장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정선군수인 (신동읍장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정선군수인 (남면장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정선군수인 (남면장전용)	

신조공인 인영

신조공인명	인 영	신조공인명	인 영
통합발급기전용 정선군수인 (임계면장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정선군수인 (임계면장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신동읍장인 (민원실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신동읍장인 (민원실전용)	
통합발급기전용 남면장인 (민원실전용)		통합발급기전용 남면장인 (민원실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임계면장인 (민원실전용)		통합발급기전용 임계면장인 (민원실전용)	

정선군 공고 제2013-26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예정사실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없어 영업소 폐쇄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9일

정 선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3. 처분 예정영업소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오리떼	최시옥	강원도 정선군 남면 자못골길 14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단휴업	영업소 폐쇄

4. 영업소 폐쇄 예정일 : 2013. 04.12

5.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37조를 위반(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함에 따라, 같은법 제7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던 식품접객업소가 2013.04.12.일부터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소 폐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정선군청) 또는 재결청(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선군보건소 위생담당 ☎ (033) 560 - 2312

정선군공고 제2013-272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총연장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신동읍	리도	창가선	신동 204호	고성리 702-2	덕천리 418	10 (0.20)	고성리 926전	6.0	6.0	도로 선형변경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건설방재과)

3. 사업시행기간 : 2013.04. ~2013.1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신동읍 리도 20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성명	주소	지분	
1	신동읍 고성리	927	전	314	27	강옥여	인천 서구 가좌동 215 정아아파트 506		
2	신동읍 고성리	926	전	1,008	144	황은미	신동읍 고성리 946		
3	신동읍 고성리	산283	임	63,372	87	이은순	신동읍 운치리 1082		
4	신동읍 고성리	산290	임	26,975	729	최월선	사북읍 사북리 344-99		
5	신동읍 고성리	941-1	도	710	438	국(건설)			
6	신동읍 고성리	929	전	2,856	488	현상순	신동읍 고성리 695		
7	신동읍 고성리	930	대	298	2	현상순	신동읍 고성리 695		
8	신동읍 고성리	931	답	932	9	현수철	신동읍 고성리 915		
9	신동읍 고성리	914	전	14,380	175	현상해 송영식	신동읍 고성리 914		
10	신동읍 고성리	1048	구	20,846	55	국(농림수산부)			
11	신동읍 고성리	677-2	전	4,757	157	현수인	충북 제천시 청전동 985 두진백로아파트 103-902		
12	신동읍 고성리	678	전	5,438	118	이일환	신동읍 고성리 678		
계				141,886	2,429				

노 선 지 정 도

위 성 사 진

